

축 사

여러분, 이 사색과 학구의 계절에 우리 법조계와 학계의 중진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미 비교법에 관한 세미나를 가진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국말이 아직 서투르지만 영웅적인 시도를 할테니 실수를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세미나에서 수고해 주신 열두분 연사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 바쁘신 중에도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이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이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끝나게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한국법제도, 미국법제도, 또 모든 외국법제도를 관련시켜서 공부해야만 우리들 법제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절에 우리들은 책을 통해서 외국법을 공부할 수 있었지만, 졸업한 후에는 일상업무 때문에 그런 기회까지도 갖지 못합니다. 여기에 따른 한 가지 해결책으로 Berkeley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Berkeley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미국법과 또 다른 외국법에 대해서 걸문을 넓히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법에 대한 지식도 더 넓힐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Berkeley에서 여러분을 가르친 교수들도 한국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배운 이 외국법을 모방하지만 말고, 한 가지 참고로 해서 한국실정에 알맞게 활용만 시킨다면, 우리 Berkeley 계획은 한국법제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미나가 끝난 후에도 한국법제도의 강화,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해주시고, 한국 법조계의 신속한 진보를 위해서 법조인 전부가 같이 힘써 주셔서 한국법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Berkeley에서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국내에서의 이 경험이 여러분들 앞으로의 활동에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71년 10월 30일

국제법률센터

버나드·조세프·프리트